

2025년도 제77회(2024년 시행)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제77회(2024년 시행)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I 응시자격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 동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법률 제19421호, 2023.5.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 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 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II 시험일정 등

구분	시험유형	
	결과평가	과정평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2024. 7. 22.(월) 09:00 ~ 7. 26.(금) 18:00 (인터넷 접수)	
응시표 출력	2024. 8. 14.(수)	
응시수수료	856,000원	
시험기간	2024. 9. 7.(토)	2024. 11. 14.(목) ~ 11. 29.(금)*
시험장소	지정대학 실습실**	국시원 실기시험센터
합격자 발표	2024. 12. 20.(금)	

※ 시험일자 및 cycle은 시험기간 중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시험기간은 원서접수 결과(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대학, 외국대학 졸업자 - 국시원이 지정하는 대학

Ⅲ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안내

구분	내 용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7. 22.(월) 09:00 ~ 7. 26.(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202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접수 가능함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www.kuksiwon.or.kr) ※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6,000원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 (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간편결제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 ■ 감면 자격확인 *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로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 스캔 시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접수 관련 문의 전화	☎ 1544-4244 (고객상담센터)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 (응시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환불요율	환불기간
100%	2024. 7. 27.(토)~8. 2.(금)
50%	2024. 8. 3.(토)~9. 2.(월)

* 이 외 환불기준은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참고

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다음의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2024. 7. 22.(월) ~ 8. 2.(금)

IV 시험방법 등

가. 시험유형 및 평가내용

시험유형		평가내용
■ 결과평가	수기문항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하여 기본 기술적 수기
■ 과정평가	진료문항	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수기문항	기본 기술적 수기
	복합문항	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나. 시험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시험유형		출제문제수	시험시간	시험실수	배점
■ 결과평가	수기문항	3문제	120분	1개	300점 (문제 당 100점)
■ 과정평가	진료문항	1문제	10분	1개	100점
	수기문항	1문제	10분	1개	100점
	복합문항	1문제	10분	1개	100점

다. 시험방법

시험유형	시험방법
■ 결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는 시험 시작 및 종료 안내에 따라 3개 문제(분야별 1문제)를 한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수행합니다. 평가자는 응시자의 결과물을 별도의 채점 작업에서 평가합니다.
■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는 3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합니다.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등을 평가합니다.

* 각 시험실에서 중도 퇴실 및 시험을 종료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실에 재입실 불가.

라. 시험시간표

시험유형	사이클(cycle)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 결과평가	1	09:00	10:30 ~ 12:30
	2	12:20	13:50 ~ 15:50
■ 과정평가	1	09:20	10:20 ~ 11:03
	2	10:10	11:10 ~ 11:53
	3	11:00	12:00 ~ 12:43
	4	13:20	14:20 ~ 15:03
	5	14:10	15:10 ~ 15:53
	6	15:00	16:00 ~ 16:43

*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은 응시자가 실기시험장 응시자대기실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임.

V 합격자 결정(발표) 및 면허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 결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3] 참조)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2021-188호, 2021.7.1)에 의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나. 합격자 발표 및 이의제기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4. 12. 20.(금) 17:00
- 합격자 발표방법
 -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 휴대폰 문자(SMS)(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자에 한함)
- 이의제기 기간 : 2024. 12. 24.(화) 18:00까지
 - *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가능

다. 면허증 교부신청

- 치과의사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VI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일 및 사이클별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실기시험장 응시자 대기실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 ※ 다만, 응시자대기실에서 응시자 교육 후 **시험실 이동시간 전까지는 입장을 허용**하며, 시험장 이동시간 이후 입장은 결시 처리합니다. 아울러, 시험 전 응시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 응시자는 무작위 배정된 시험일 및 사이클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사이클별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30분 전부터 응시자대기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응시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지참 및 결시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응시기회 부여 등의 조치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는 다음의 준비물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준비물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가운, 보안경 미지참 및 미착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준비물
결과평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가운* • 보안경(고글, face shield, 안경 포함)*
	응시자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optic 허용), •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RA type만 허용, optic 허용) • 트레이 (tray, 기구세트거치용) • 기구세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 또는 양면 mirror : 4호 또는 5호 사이즈 • pincette • explorer • endodontic explorer • periodontal probe • spoon excavator </div>
	추가 허용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페 (루페용 light 허용) • 수용삭제기구 (hand cutting instrument) - chisel, hoe, hatchet만 허용 • b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speed용, contra angle low speed용 - diamond bur 및 carbide bur만 허용 • bur stand, file stand • 웨지 • 밴드 (band retainer 허용)
과정평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가운*

- 문제해결에 필요한 bur 등 최소한의 소모품은 국시원에서 지급합니다. 단, 해당 물품이 시험 중 파손 또는 분실되더라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비물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시험 중 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소지한 때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사용한 때에는 부정행위로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의료법」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대한민국 여권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라. 결과평가 시험 중에는 반드시 개인보호장구(가운, 보안경, 마스크, 글러브 등)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비 및 도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예방을 위하여 (맨발)슬리퍼, 반바지 등의 노출 차림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 장신구 등)도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에서의 시험시간은 방송 또는 구두로 “시험시작, 종료 2분전, 종료” 등과 같이 안내되며, 시험 중 시간 배분은 시험실에 비치된 벽시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종료 후에도 퇴실을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술기를 시행하는 경우 및 시험 결과물(실기작품)을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합니다.

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시간(사이클) 중에는 시험실 및 시험장에서 퇴장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 배탈·설사 등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퇴실한 시험실에 재입실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차.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과평가 감점적용 기준]		
1. 다른 치아를 손상하는 행위		
구분	지정 치아	손상 치아
지정된 치아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	100점 감점	-
지정된 치아를 치료했으나 다른 치아를 손상시킨 경우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	아래 표의 감점 기준 적용*
지정된 치아 인접치의 인접면을 손상시킨 경우	-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
* 시험문제별 총점 100점 기준에서 감점 적용.		
* 다른 치아의 손상 정도에 따른 감점기준		
감점	감점 적용 기준	
30점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마무리 및 연마로 충분한 경우	
60점	단순 수복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100점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 등 단순 수복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치아를 손상한 시험문제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시험문제에 감점 적용. • 다른 치아를 손상한 시험문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3개 시험 문제 중 응시자의 취득점수가 가장 낮은 시험 문제에 감점 적용. - 단, 취득 점수가 감점 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 시험문제를 0점 처리함. 		
2.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		
구분	세부 기준	조치
마네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네킨의 상체가 수평보다 낮아져 있는 경우 • 상악 교합 평면과 수평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보다 작은 경우 	(1회) 경고 (2회) 20점 감점* (3회) 결과평가 모두 0점 처리
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네킨의 덴티폼과 페이스얼 스킨 외 목, 가슴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 마네킨 가슴에 물품 등을 올려놓는 경우 	
* 3개 시험문제 중 응시자의 취득점수가 가장 낮은 시험문제에 감점 적용. - 단, 취득 점수가 감점 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 시험문제를 0점 처리함. * 시험문제별 총점 100점 기준에서 감점 적용.		
3. 시험문제별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		
[과정평가 감점적용 기준]		
• 잘못된 치아 선택 등 <u>시험문제별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u>		

타. 특수치는 과도한 기구 조작 시 파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핸드피스나 수기구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치아 파절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파.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하. 시험시간이 출퇴근시간 등과 중복되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 시험문제, 채점(기준)표 및 시험 모니터링 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 모니터링 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함

-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습니다.
- 따라서 실기시험 문항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하여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관심) 조정(2024.5.1.)에 따라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 (확진자 시험 응시) 배정받은 시험일 1일전 18:00까지 증빙자료(의료기관 검사 결과)와 [별첨]의 ‘치과의사 실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 시험일 등을 안내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확진 결과 확인 즉시 유선(02-2087-8925) 상담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공고문 하단 별첨된 “치과의사 실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일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마침